

보도일시 (인터넷) 2023. 6. 29.(목) 11:00,
(지면) 2023. 6. 30.(금) 조간

배포 2023. 6. 29.(목) 06:00

갈치·참조기·붉은대게 등 7월부터 금어기 시작

-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10개 어종의 금어기 7월부터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토)부터 31일(월)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 잡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 (참조기)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8월 10일 / (붉은대게 수컷) 강원 연안자망은 6월 1일~7월 10일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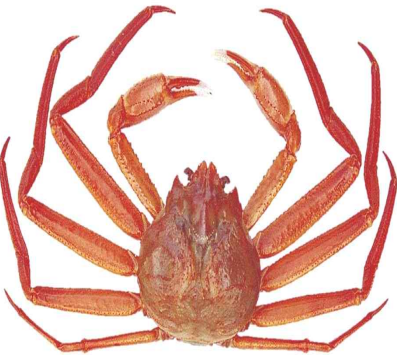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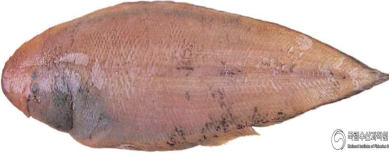
* 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 호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류충현 (044-200-5540)

참고 1

7월 금어기 대상어종 포획금지규정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 포획·채취 금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갈치	<i>Trichiurus lepturus</i>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이북)해역에 한정하여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조기	<i>Larimichthys polyactis</i>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붉은대게	<i>Chionoecetes japonicus</i>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암컷 붉은대게는 연중 포획금지)
개서대	<i>Cynoglossus robust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옥돔	<i>Branchiostegus japonicus</i>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삼	<i>Stichop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닭새우	<i>Panulirus japonicus</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백합	<i>Meretrix lusoria</i>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오분자기	<i>Sulculus diversicolor</i>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키조개	<i>Atrina pectinata</i>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고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금지체장



월	1월	3월	4월	5월
품종	명태	가리비	살오징어	참돔
포획금지기간	1.1~12.31	1.16~2.15	4.1~5.31(단,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5.1~5.31(신설)
포획금지체장	35cm		15cm	25cm

월								6월				
품종	대하	전어	대합	갈치	굴피	말뚝지	주꾸미	낙지	참홍어	꽃게	소라	필담새우
포획금지기간	5.1~6.30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5.1~7.31	5.1~7.31(제주 연중)	5.1~7.31	5.1~7.31	5.11~8.31	6.1~6.30 (지자체 별도 고시 가능)	6.1~7.15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6.1~8.31
포획금지체장						18cm			42cm	6.4cm	5cm(제주 7cm)	10cm

월	7월											
품종	새조개	대게	갈치	참조기	해삼	백합	개서대	닭새우	오분자기	키조개	붉은대게	육돔
포획금지기간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6.1~11.30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7.1~7.31(단, 유자망 4.22~8.10)	7.1~7.31	7.1~8.20	7.1~8.31	7.1~8.31	7.1~8.31	7.1~8.31	7.10~8.25 (단, 강원연안자망 6.1~7.10)	7.21~8.20
포획금지체장		9cm	18cm(함문장)	15cm		5cm	26cm	5cm	4cm(제주)	18cm(부산,울산, 강원, 경북, 경남)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품종	돌부기	전복류	넙치	도박류	연어	돔	취노래미	개다리새우	우뚝가사리	문치가자미
포획금지기간	8.1~9.30	9.1~10.31(제주 10.1~12.31)	9.1~11.30(제주) (단, 제주도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10.1~익년 4.30	10.1~11.30	10.1~익년 1.31	11.1~12.31	11.1~익년 1.31	11.1~익년 4.30	12.1~익년 1.31
포획금지체장		7cm(제주 10cm)					20cm			20cm (단, 3년간 17cm)

구	제	금 지 체 장																			
명	세	기름가자미	기수재첩	갯장어	넙치	농어	도루묵	대문어	돌돔	미가치	민어	방어	불락	봉장어	용가자미	조피불락	참가자미	참돔	청어	황돔	황복
포획금지체장		20cm (단, 3년간 17cm)	1.5cm	40cm	35cm	30cm	11cm	600g	24cm	40cm	33cm	30cm	15cm	35cm	20cm (단, 3년간 17cm)	23cm	20cm(단, 3년간 17cm)	24cm	20cm	15cm	20cm

* 빨간색 : 2021.1.1부터 변경되는 어종

수산동물의 종류별 제장 기준	어류	갑각류	오징어류	패류	암컷 포획금지 4종
전장	항문장	두흉갑장	외투장	각장	각종
	체반폭	두흉갑장			

①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가리비(가리비)의 경우 '21.1.1~'23.12.31까지는 17cm 이하 적용, '24.1.1부터는 20cm 이하 적용

②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③ 개정 어종의 경우, '21.1.1부터 시행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20.9.22 공포 및 11.10 공포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3항)